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266
----------	------

2023년 9월 14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9. 14. 서호연 의원 외 13명

나. 회부일자 : 2023. 9. 14.

다.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23년 9월 1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까지 서울특별시는 여성 권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을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경제포럼에 따른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23년 기준 146개국 중 105위에 불과한 실정임..
- 우리나라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더욱이 청소년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질병이 아닌 ‘자살’이며, 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 ‘아동 학대’ 등이 꼽히고 있음.

- 교권 침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있음. ‘아동 학대 방지’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은 최소한의 생활 지도와 훈육, 훈계조차 금지되었고, 그 결과 교사의 99%가 학부모와 학생 등 다른 교육환경 구성원으로부터 갑질과 폭력 등의 형태로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
- 학생들 역시 입시에만 매몰돼 전인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등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인권 저변을 확대하려 하였으나, 학생의 의무는 배제한 채 권리만 강조하여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로 주목해온 장애인과 노숙인뿐 아니라 체육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제도와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임.
- 특정 계층의 인권과 권익에 초점을 맞추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현시점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해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 논의를 위한 구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¹⁾ 구성을 제안한 것임.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서울시정과 교육 정책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최근 도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아젠더로 부각되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국가 중심에서 도시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민 권리선언과 함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2012년)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한, 2012년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 한편, 통계청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만 15세)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30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²⁾

1)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2) 통계청,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91면.

- 아동·청소년(9~18세)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은 부정정서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악화됨(삶 만족도 6.99→6.80, 우울, 걱정 등 부정 정서는 2.67→2.94).
- 여성 권익 분야에서도 세계경제포럼에 따른 성 격차 지수는 2023년 146개국 중 105위에 머물러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³⁾
- 현재 서울은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보육, 돌봄, 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차별, 안전 등의 강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 아울러, 서울시와 교육청은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노동자 등의 다양한 계층과 분야별로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와 사업을 각 소관 실·국별로 운용 중임.
- 또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인권담당관)·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을 소관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정책실(장애인복지정책과)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교육청(교육·학예)을 소관하는 교육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을 소관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등이 관련 된다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인권 관련 조례 소관부서>

조례	소관부서	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청소년정책과	행정자치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지원과	주택공간
인권 기본 조례	인권담당관	행정자치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정책과	보건복지

3)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3)」(Insight Report June 2023), 225-226 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정책과	보건복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노동정책담당관	기획경제
학생인권 조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교육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교육
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체육건강예술교육과	교육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결의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5)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에 긴급 의견 조희 결과, 별다른 의견 없음.
-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위원회별 사전협의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 감사위원회(인권담당관)·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을 소관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정책실(장애인복지정책과)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사전 협의와 업무지원에 대해 동의하였음.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8명, 찬성 8명)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호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26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9월 14일

발 의 자: 서호연, 곽향기, 김길영,
김종길, 김혜영, 박 석,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이병윤, 이새날, 정지웅,
황철규 의원(13명)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 논의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최근까지 서울특별시는 여성 권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을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경제포럼에 따른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23년 기준 146개국 중 105위에 불과한 실정임.
- 우리나라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더욱이 청소년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질병이 아닌 ‘자살’이며, 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 ‘아동 학대’ 등이 꼽히고 있음.

- 교권 침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있음. ‘아동 학대 방지’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은 최소한의 생활 지도와 훈육, 훈계조차 금지되었고, 그 결과 교사의 99%가 학부모와 학생 등 다른 교육환경 구성원으로부터 갑질과 폭력 등의 형태로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
- 학생들 역시 입시에만 매몰돼 전인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등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인권 저변을 확대하려 하였으나, 학생의 의무는 배제한 채 권리만 강조하여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로 주목해온 장애인과 노숙인뿐 아니라 체육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제도와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임.
- 특정 계층의 인권과 권익에 초점을 맞추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현시점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해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이송처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헌법 제10조를 포함한 다양한 법령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세계경제포럼에 따른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146개국 중 105위에 머물고 있고, 여성혐오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청소년 삶의 만족도 역시 OECD 최하위 수준이며,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 등의 사유로 사지에 내몰려 청소년 사망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자살이 꼽히고 있다.
- 교사들은 최소한의 생활 지도와 훈육이 금지당한 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전인적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경쟁적 입시환경과 학교 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 지금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노숙인 등 전통적으로 주목했던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체육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요구에 우리 사회 제도와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회 전(全) 계층의 인권과 권익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아닌 개별적인 접근 방식의 한계에 따른 것이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시민사회 모든 계층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23.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